

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

일부개정령안

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”을 “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”을 “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”을 “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”로, “제2조제2항”을 “제2조제2호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」”을 “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중 “「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조제1항”을 “「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중 “「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조제2항”을 “「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중 “「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」 제7조”를 “「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제7조”로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 중 “「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」 제8조”를 “「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8조”로 한다.

별지 제5호서식 중 “「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」 제9조제1항”을 “「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9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6호서식 중 “「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」 제9조제2항”을 “「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9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7호서식 중 “「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0조”를 “「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0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</u> <u>자원 관리법 시행규칙</u>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비상대비 자원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 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 중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 업체의 범위) 「비상대비자원 관 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 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와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2. (생략) 제3조(권한의 위임)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은 「비상대비자원 관리 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 다) 제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·광역 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	<u>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</u> <u>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</u> 제1조(목적) ----- 「비상대비 에 관한 법률」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제2조(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 업체의 범위) 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----- 제2 조제2호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제3조(권한의 위임)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은 「비상대비에 관한 법 률 시행령」 ----- ----- ----- -----.

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 지사”라 한다)에게 위임한다. 1.·2. (생략)	----- 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
---	--